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전성원

전화 062-231-4302 / 팩스 062-231-4744

보도자료

2019. 10. 28.(월)

자료문의 : 형사3부장실

전화번호 : 062-231-4312

주책임자 : 부장검사 김훈영

제목

「광주 클럽 붕괴사건」 수사결과

- 現 운영자 2명 구속소, 前現 운영자 4명 및 정·점·검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 광주지검(검사장 문찬석)은 2019. 7. 27. 새벽 광주 소재 클럽의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로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 현 운영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현 운영자 4명을 같은 죄 등으로, 건축물 정기점검 관계자 2명을 위계공무집행 방해로 각 불구속기소하였음
- 광주지검은 사고발생 직후 검·경 대책회의를 개최, 붕괴원인에 대한 전문감정단을 통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도록 지휘하고, 안전사고 유사사례 및 법리 검토를 공유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체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
- 그 결과, 이 사건 붕괴 사고가 ① 전 운영자의 1차 증축 및 현 운영자의 2차 증축시 하부 기둥 없이 상판을 천정에만 부착하면서 지나치게 얇은 두께의 복층 자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가용접 내지 점용접에 불과한 Tack Welding 방식으로 상판을 불완전하게 용접한 과실, ② 사건 당일 다수의 손님들이 클럽에 입장한 상태에서 복층 구조물에 과다 인원을 수용하고, 클럽 내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운영상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밝혀냈음

■ 이러한 수사결과에 따라, 본건 사고의 주요원인을 제공한 현 운영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현 운영자 4명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한 정기점검 관계자 2명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추가인지하여 불구속기소하였음

■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 대해 의료구조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에도 힘쓸 예정임

I

주요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A○○(구속), B○○(구속), C○○, D○○(現 운영자)

1. 업무상과실치사상

- 하중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적절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고 불완전한 용접으로 복층을 증축(2차 증축),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출입 인원을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구조물이 붕괴하여 피해자 34명이 사상에 이르게 함

2.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붕괴된 복층 일부를 증축(2차 증축)
-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

● E○○, F○○(前 운영자)

1. 업무상과실치사상

- 하중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적절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고 불완전한 용접으로 복층을 증축(1차 증축)한 업무상과실로 구조물이 붕괴하여 피해자 34명이 사상에 이르게 함

2.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 관할관청의 허가·신고 없이 보를 해체하고, 붕괴된 복층 일부를 증축하는 등 대수선·증축(1차 증축)

-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

● GOO, HOO(정기점검 관계자) - 위계공무집행방해

- 건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의 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관할관청의 업무를 방해

II 수사경과

● 2019. 7. 27. 02:38경 클럽 구조물 붕괴 사건 발생

- 경찰 등 합동 감식 실시, 검사 현장임장 및 변사자 직접 검시

● 2019. 7. 30. 검찰, 사망 피해자들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의뢰

● 2019. 8. 1.~8. 28.

- 검경대책회의 개최, 관련 영장 신청 및 청구 등 사고발생 직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의를 통해 수사 진행

※ 강구조학회를 통한 감정 등 붕괴 관련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을 지휘

● 2019. 8. 12.~8. 16.

- 강구조학회 현장조사

● 2019. 9. 6. 검찰 송치 후 피의자들 및 참고인 조사

● 2019. 9. 23. 현 운영자 2명 구속 기소, 전현 운영자 3명 불구속 기소

※ 법원은 공동운영자 C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경미하다는 점, 피해 전보를 위해 노력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 2019. 10. 24. 정기점검 관계자 2명 위계공무집행방해 인지

● 2019. 10. 28. 현 운영자 1명 및 정기점검 관계자 2명 불구속 기소

※ 클럽 종업원, 前건물소유자, 용접기사 등은 사고예견가능성 없는 등 혐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

III

수사결과 : 붕괴 원인 및 관련자 과실 책임

1] 설계·시공 부실

- 구조안전성에 대한 검토 없이 부실 설계
 - 증축된 복층 구조물은 하부 기둥 없이 슬래브를 천장에 매달아 부착하는 방식으로 타 공법에 비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에도 적정하중 및 구조안정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자격자 B가 시공함
- 증축된 복층 구조물 및 달대¹⁾에 부적합 자재 사용
 - 증축된 복층 구조물은 하부 기둥 없이 슬래브를 천장에 매달아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공, 자재의 두께가 최소 3mm 이상은 되어야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두께가 1.4mm에 불과한 자재를 사용함
- 접합부 용접상태 불량
 - 슬래브와 천장을 연결하는 달대의 접합부는 가용접 내지 점용접 수준의 불완전한 Tack Welding²⁾ 방식으로 충분한 밀착접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용접기술 부족으로 인해 일부 자재에서 잔류응력과 뒤틀림에 의한 찢어짐, 천공 등의 현상이 발견됨

2] 클럽 운영상 안전관리 부실

- 과다 인원 수용
 - 증축된 복층 구조물은 자재의 두께 부족, 용접상태 불량 등으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많은 하중이 가해질 경우 붕괴 위험이 있었음
 - 또한, 조례³⁾ 제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제6호에 의하면 영업장내 입장인원은 객석면적 1㎡당 1명으로 제한됨
 - 조례상 제한인원 349명이나 사고 당일 약 393명이 입장하였고, 복층 구조물에도 별다른 수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운영상 과실 확인됨

1) 천장에 매달아 고정하기 위한 부재

2) 본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

3)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주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263호)

- 안전요원 미배치

- 조례 제7조 제7호에 의하면 안전요원은 영업장면적 100㎡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 100㎡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함에도,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험상황에 대하여 즉시 대처하지 못한 과실 확인됨

IV 수사의 의의

- 많은 손님들을 수용하여 수익을 높이려는 욕심에 구조적 안전을 무시한 불법 증축행위를 거듭한 결과 그 곳을 찾은 2·30대의 젊은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에 따라 광주를 찾은 외국인 선수들까지 피해를 입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책임자들을 엄벌함은 물론 향후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림
-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경이 협조체제 및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붕괴 원인에 대한 신속·정확한 과학적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는 등 성공적으로 사건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음
-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광주전남 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자지원실의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상해 피해자 4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음(사망 피해자 유족 포함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절차도 진행 중)

V 향후 계획

-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본건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